



국토교통부

## 영주국토관리사무소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[청렴연의]청탁금지법 홍보 내용 전파

1. 운영지원과-1901호(2016.04.14)와 관련입니다.

2. ‘생활 속의 청렴실천, 업무 속의 청렴 실천’을 위하여 진행 중인 청렴연의 (清廉漣漪)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 부에서 제작한 ‘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팸플릿’을 활용 및 전파하여 2016.9.28. 시행 예정인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속칭 ‘김영란법’)」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 내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.

가. 전파내용: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(부정청탁 금지, 금품수수 금지)

나. 전파방법: 구내식당 및 청사 내 주요 장소에 부착 및 게재

붙임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게재자료 1식. 끝.

주무관

과장

소장

2016. 8. 30.

협조자

시행 운영지원과-4719

접수

우 36145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342번길 75

/ <http://pcmo.molit.go.kr>

전화번호 054-630-0011 팩스번호 054-630-0029 / [platina42@molit.go.kr](mailto:platina42@molit.go.kr) / 비공개(5)

##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?



### 부정청탁 실제사례

- 사례 1** ○○기관에서 소관 사업을 시행하면서, 사업시행자에게 본인상급자였던 前 직장선배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명을 우선으로 알려주며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압력 행사
- 사례 2** ○○사무소 직원은 공사를 도급받은 직무관련업체에게 과거 본인이 공사감독 시절 알게 된 하도급 업체를 소개하며 챙겨 봐 달라고 당부

### 지위·권한 남용은?? 갑질 행태!!

‘갑질 행태’는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금품·향응 수수 등 직접적 불법행위와 각종 편의 및 비용 제공 요구, 무리한 압력행사 등 간접적 직권남용행위가 포함됩니다.

##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사례(7가지)

- 1 법령·기준에서 정하는 절차·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
-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
- 3 선출직 공직자·정당·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
-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·요구하거나 확인·문의 등을 하는 행위
-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·증명 등을 신청·요구 하는 행위
-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·제도·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
-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행위



## 부정청탁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?

제3자를 통해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**이해당사자**  
→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**제(민간인)**  
→ 2천만원 이하 과태료

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**공직자등**  
→ 3천만원 이하 과태료

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**공직자등**  
→ 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
### 과태료

### 형사처벌

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,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.

##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?

동일인으로부터  
1회 100만원 초과  
매 회계연도  
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

직무와 관련하여  
1회 100만원 이하  
금품등 수수

이것이~  
금품등 수수예요



배우자가  
수수 금지 금품등을  
받은 경우

외부강의시  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
금액을 초과하는  
사례금 수수

###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?

직무와 관련하여  
**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**을  
수수한 공직자등  
→ 수수금액 2배 이상,  
5배 이하의 과태료

기준초과 외부강의 사례금을  
수수한 공직자등  
→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**과태료**

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 
동일인으로부터  
1회 **1백만원** 또는  
매 회계연도  
**3백만원 초과 금품등**을  
수수한 공직자등  
→ 3년 이하 징역,  
3천만원 이하 벌금

**형사처벌**

###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등 사례(8가지)

- 1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- 2 원활한 직무수행·사고·의례·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액 범위안의 금품등
- 3 정당한 권원(權原)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
-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(4촌 이내 인척, 8촌 이내 혈족, 배우자)
-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,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·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- 6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**일률적으로** 제공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 등의 금품등
-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
- 8 그 밖에 다른 법령·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

결혼을 축하한다

감사합니다  
큰아버지



### 청탁금지법 시행령(안) 주요내용

#### 사고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의 기액

- ▶ 음식물 : 3만원(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 등)
- ▶ 선물 : 5만원(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금품)
- ▶ 경조사비 : 10만원(축의금·조의금, 화환·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일체의 선물·음식물, 기액을 합산함)

#### 외부강의의 사례금 상한액

(단위 : 만원/1시간, 기고 : 1건)

구분	장관	차관	4급 이상	5급 이하
상한액	50	40	30	20

\* 1시간 초과시 상한액 1/2, 2시간 초과인 경우 미지급

\* '16. 6. 시행령(안)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시행령 확정 이후 조정될 수 있음